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



성 북 구
(건설관리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변 호	363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4년 11월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하여
「성북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」
일부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‘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’에서 ‘옥외광고물
게시 시설의 위탁 등’으로 제목을 변경하여, 전자게시대 등
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 게시 시설의 위탁
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
관한 조례 제9조제3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결과

- 기 간 : 2024. 9. 19. ~ 2024. 10. 10. (21일간)

- 방 법 :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
- 결 과 : 의견없음

2) 입법예고 방법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
3) 부패/인권/성별/아동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
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 제목 “(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)”을 “(옥외광고물 게시 시설의 위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조례”를 “조례 제9조제3항,”으로, “따른”을 “따른 전자게시대,”로, “지정벽보판”을 “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현수막”을 “전자게시대, 현수막”으로, “지정벽보판”을 “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<u>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</u>) ① 구청장은 시 <u>조례</u>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에 <u>따른</u>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<u>지정벽보판</u> 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 ② (생략) ③ <u>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</u> 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	제21조(<u>옥외광고물 게시 시설의 위탁 등</u>) ① ----- ---- <u>조례 제9조제3항</u> , ----- ---- <u>따른 전자게시대</u> , ----- -- <u>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전자게시대, 현수막</u> ----- ----- <u>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</u> -----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위탁비용, 전기요금·통신요금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옥외광고물 게시시설(전자게시대 등) 광고료로 위탁비용, 전기요금·통신요금 충당 가능

4. 작성자

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장 이용철